

거창군 국가유공자 예우 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6 ~ 90
----------	--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1. 제안 이유

6.25참전 및 월남참전 유공자와 전상·공상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, 순직군인의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을 통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,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추가 지원대상인 전상·순직·공상군인에 대하여 정의함(안 제2조제7호 ~ 제9호)

나. 명예수당 지급대상 추가함(안 제10조제1항제1호나목)

- 참전유공자와 전상·공상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, 순직군인의 유족: 월 3만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3조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,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

나. 예산조치: '17년도 예산 360백만원 확보예정

다. 합 의: 기획감사실(규제개혁담당)

라. 기타사항

- 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(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(3) 입법예고
 - (가) 예고기간: 2016. 10. 31. ~ 11. 21.
 - (나) 예고결과: 의견있음(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붙임)
- (4) 비용추계서: 붙임
- (5) 성별영향분석: 해당사항 없음
- (6) 다른 지자체 현황 : 창녕군, 산청군, 양산시, 고령군, 봉화군, 군위군 등

입법예고 결과 요약서

의견제출자	제출의견	검토의견	처리결과(통보내용)
상이군경회 거창군지회 · 전물군경유 족회거창군 지회 · 전물군경미 망인회거창 군지회	○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범위 확대 - 참전유공자 미망인과 공상군경, 전상·공상·순 직군경 미망인, 공상·순 직군경 유족으로 범위 확대	○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범위 변경 - 참전유공자와 전상· 공상군인 미망인, 순직군인의 유족	○ 일부 반영 (군경 ⇒ 군인만 지원 소방·경찰공무원 제외)

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 중 “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“전상군인”이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군인을 말한다.
8. “순직군인”이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군인을 말한다.
9. “공상군인”이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군인을 말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“전몰군경의 유족과 참전유공자”를 “전몰군경과 순직군인의 유족, 참전유공자, 참전유공자와 전상·공상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명예수당: 전몰군경과 순직군인의 유족, 참전유공자, 참전유공자와 전상·공상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

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명예수당
 - 가. 전몰군경의 유족, 참전유공자: 월 10만원
 - 나. 참전유공자와 전상·공상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, 순직군인의 유족 : 월 3만원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“전몰군경”이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 <p>제10조(지급대상 및 지급기준) ① 군수는 <u>전몰군경의 유족과 참전유공자</u>로서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. 다만,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<u>명예수당: 참전유공자, 전몰군경의 유족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----- -----</p> <p>7. “전상군인”이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군인을 말한다.</p> <p>8. “순직군인”이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군인을 말한다.</p> <p>9. “공상군인”이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군인을 말한다.</p> <p>제10조(지급대상 및 지급기준) ① -- <u>전몰군경과 순직군인의 유족, 참전유공자, 참전유공자와 전상·공상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<u>명예수당: 전몰군경과 순직군인의 유족, 참전유공자, 참전유공자와 전상·공상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</u></p>

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비용발생 요인: 참전유공자와 전상공상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, 순직군인의 유족: 월 3만원의 명예수당
- 관련조문: 제10조(지급대상 및 지급기준)

2. 비용추계의 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 선양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

나. 추계의 결과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1차년도 (2017년)	2차년도 (2018년)	3차년도 (2019년)	4차년도 (2020년)	5차년도 (2021년)	합계
총 비용(a - b)	360	360	355	350	345	1,770
세출	도비	-	-	-	-	-
	군비	360	360	355	350	345
	소계(a)	360	360	355	350	345
세입	지방세	-	-	-	-	-
	소계(b)	-	-	-	-	-

3. 관련 의견

- 참전유공자와 전상공상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, 순직군인의 유족의 예우를 위한 최소 경비 지원

II.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

- 참전유공자와 전상공상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, 순직군인의 유족의 명예수당: 360백만원

작성자: 복지정책과장 박완묵